

순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78호 2023. 1. 26. (목)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3-177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순천시 공고 제2023-194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순천시 공고 제2023-19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순천시 공고 제2023-199호 순천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24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발행 : 순천시

편집 : 홍보실 (☎ 749-5729, FAX 749-4625)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3-177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도입 및 운영의 체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인증대상,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인증종류, 인증신청, 인증서 및 현판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인증 유효기간, 인증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인증 사후관리, 현장조사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6. ~ 2. 15.(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순천시청(도시계획과)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952, FAX : 061-749-466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 1]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준)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2.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증종류) 시설물등은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예비인증 : 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
2. 본인증 : 시설물등의 공사 완료 후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예비인증 포함.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
2. 시설물등의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서류검토 후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에 자문(예비인증) 및 심의(본인증)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서 및 현판 교부)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현판을 제작·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현판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증 신청 시 인증현판 사용을 표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호(인증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시설물등 공사완료 6개월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 상실
2. 본인증 : 본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②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물 등은 5년마다 재인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 이내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승계신고) ① 본인증을 받은 자가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은 본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본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본인증 받을 당시 시설물등의 준공상황 유지 여부

2.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3.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임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이미 준공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예비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예비인증 신청서

예비인증 신청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실 무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 위 / 직 급	
Tel			Fax		E - m a i l		
인 증 대 상	시 설 명						
	소 재 지						
	사 업 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세 부 내 용						
용역 대행사	주 소				대 표 전 화		
	업 체 명 (대표 자)				실 무 담 당 자 (연 락 처)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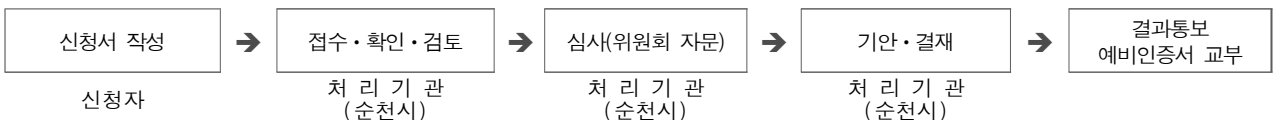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수수료
	2.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3. 기타 증빙서류(신청 동의서 등)	없음

처 리 절 차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본인증 ([] 연장) 신청서

본인증 신청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실 무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 위 / 직 급	
		Tel		Fax		E - m a i l	
인 증 대 상	시 설 명					인증현판 사용 <input type="checkbox"/>	
	소 재 지						
	사 업 비						
	사 업 규 모						
	사 업 기 간						
	세 부 내 용						
용 역 대 행사	주 소				대 표 전 화		
	업 체 명 (대표 자)				실 무 담 당 자 (연 락 처)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인증(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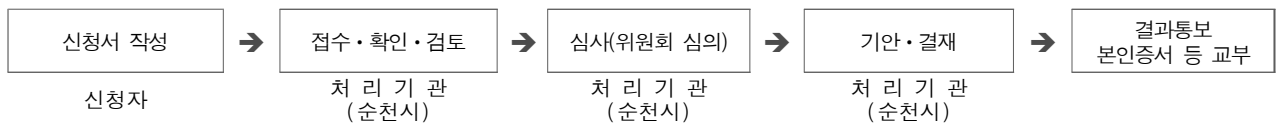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완료)사진 2. 사업 설명(계획)서, 설계 도서(현황사진,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3. 디자인 요소(형태, 재료, 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 4. 기타 증빙서류(예비인증서, 신청 동의서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 호

(예비) 인 증 서

순천대우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순천

시 설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5년)

위 시설물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시설물/공공매체/공공이미지)로 (예비)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승계신고서

승 계 하 는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실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 위 / 직 급	
		Tel		Fax		E - m a i l	
승 계 받 는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실 담 당 자	성명		부서		직 위 / 직 급	
		Tel		Fax		E - m a i l	
신 고 대 상	시 설 명						
	소 재 지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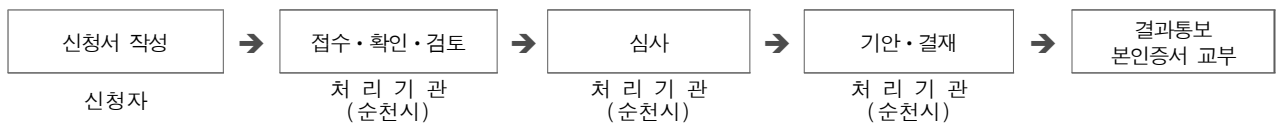
신고자(승계받은자)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증서	수수료
	2. 지위 승계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등)	없음

처 리 절 차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순천시 공고 제2023-194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수도 요금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용량 절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 함

2. 주요내용

-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기준 명확히 규정(안 제40조 제1항)
 - 2.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1.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과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6. ~ 2023. 2. 15.(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순천시장(맑은물행정과장)에게 서면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61-749-6486, FAX 061-749-4697)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붙임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를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1.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다만,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u></p> <p>3. ~ 9. (생 략)</p> <p>10. <u>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u> ----- ----- ----- -----</p> <p>3. ~ 9. (현행과 같음)</p> <p>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u>가정용 3세제 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u></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순천시 공고 제2023-19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안 제28 제1항)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3.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6. ~ 2023. 2. 15.(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순천시장(맑은물행정과장)에게 서면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486, FAX 061-749-4697)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붙임 1.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p> <p>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28조(감면 등)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p> <p>② ---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 -----.</p> <p>③ -----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p>																				
<p>[별표 7] <개정 2020.11.18.></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 면 대 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 면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td> <td>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td> </tr> <tr> <td>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액</td> </tr> <tr> <td>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의 20%</td> </tr> </tbody> </table> <p>※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p>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p>[별표 7] <개정 2020.11.18.></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 면 대 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 면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td> <td>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td> </tr> <tr> <td>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액</td> </tr> <tr> <td>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의 20%</td> </tr> <tr> <td>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d>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td> </tr> <tr> <td>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td> <td>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td> </tr> </tbody> </table> <p>※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p>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찬성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순천시 공고 제2023-199호

순천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3년 1월 26일

순 천 시 장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건 명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음부즈만) 위촉 동의안
-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안 사유(편성 사유)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신설·조정부서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 연속성 및 능률을 확보하고자 하며, 상반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필수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함.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07,545,916	1,393,051,936	14,493,980	
일 반 회 계	1,223,816,780	1,204,823,917	18,992,863	
특 별 회 계	183,729,136	188,228,019	△4,498,883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167,162,175	△4,249,000	
기타특별회계	20,815,961	21,065,844	△249,883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4. 붙임

-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 각 1부.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1. 예산총칙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07,545,916	42,226,377
일반회계	1,223,816,780	36,714,503
특별회계	183,729,136	5,511,874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4,887,39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282,821	1,538,48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709,354	1,311,28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7,921,000	2,037,630
기타특별회계	20,815,961	624,4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04,400	51,13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85,637	206,5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63,955	109,919
수질개선특별회계	6,118,646	183,55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0,863	32,42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362,460	40,874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566,269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7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07,545,916	100.00%	1,393,051,936	100.00%	14,493,980	1.04%
일반회계	1,223,816,780	86.95%	1,204,823,917	86.49%	18,992,863	1.58%
특별회계	183,729,136	13.05%	188,228,019	13.51%	△4,498,883	△2.39%
공기업특별회계	162,913,175	11.57%	167,162,175	12.00%	△4,249,000	△2.5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282,821	3.64%	51,282,821	3.68%	0	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709,354	3.11%	47,958,354	3.44%	△4,249,000	△8.8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7,921,000	4.83%	67,921,000	4.88%	0	0.00%
기타특별회계	20,815,961	1.48%	21,065,844	1.51%	△249,883	△1.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04,400	0.12%	1,704,400	0.12%	0	0.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85,637	0.49%	7,135,637	0.51%	△250,000	△3.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63,955	0.26%	3,663,838	0.26%	117	0.00%
수질개선특별회계	6,118,646	0.43%	6,118,646	0.44%	0	0.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0,863	0.08%	1,080,863	0.08%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362,460	0.10%	1,362,460	0.10%	0	0.00%

3.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407,545,916	100.00%	1,393,051,936	100.00%	14,493,980	1.04%
100 지방세수입	188,300,000	13.38%	188,300,000	13.52%	0	0.00%
110 지방세	188,300,000	13.38%	188,300,000	13.52%	0	0.00%
111 보통세	185,500,000	13.18%	185,500,000	13.32%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2,800,000	0.20%	2,800,000	0.20%	0	0.00%
200 세외수입	108,138,832	7.68%	108,138,832	7.76%	0	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81,367,027	5.78%	81,367,027	5.84%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1,512,563	0.11%	1,512,563	0.11%	0	0.00%
212 사용료수입	60,133,357	4.27%	60,133,357	4.32%	0	0.00%
213 수수료수입	8,351,889	0.59%	8,351,889	0.60%	0	0.00%
214 사업수입	1,691,950	0.12%	1,691,950	0.12%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4,436,674	0.32%	4,436,674	0.32%	0	0.00%
216 이자수입	5,240,594	0.37%	5,240,594	0.38%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0,307,964	1.44%	20,307,964	1.46%	0	0.00%
221 재산매각수입	755,290	0.05%	755,290	0.05%	0	0.00%
222 차차단체간부담금	11,000	0.00%	11,000	0.00%	0	0.00%
223 보조금반환수입	858,600	0.06%	858,600	0.06%	0	0.00%
224 기타수입	13,905,274	0.99%	13,905,274	1.00%	0	0.00%
225 지난년도수입	4,777,800	0.34%	4,777,800	0.34%	0	0.00%
23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463,841	0.46%	6,463,841	0.46%	0	0.00%
231 과징금	153,900	0.01%	153,900	0.01%	0	0.00%
232 이행강제금	375,000	0.03%	375,000	0.03%	0	0.00%
233 변상금	35,500	0.00%	35,500	0.00%	0	0.00%
234 과태료	2,558,681	0.18%	2,558,681	0.18%	0	0.00%
235 환수금	23,160	0.00%	23,160	0.00%	0	0.00%

장·관·항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236	부담금	3,317,600	0.24%	3,317,600	0.24%	0	0.00%
300		지방교부세	440,000,000	31.26%	440,000,000	31.59%	0	0.00%
	310	지방교부세	440,000,000	31.26%	440,000,000	31.59%	0	0.00%
		311 지방교부세	440,000,000	31.26%	440,000,000	31.59%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40,000,000	2.84%	40,000,000	2.87%	0	0.00%
	420	시·군조정교부금등	40,000,000	2.84%	40,000,000	2.87%	0	0.00%
		421 시·군 조정교부금등	40,000,000	2.84%	40,000,000	2.87%	0	0.00%
500		보조금	511,558,168	36.34%	505,329,499	36.27%	6,228,669	1.23%
	510	국고보조금등	377,766,588	26.84%	374,085,555	26.85%	3,681,033	0.98%
		511 국고보조금등	377,766,588	26.84%	374,085,555	26.85%	3,681,033	0.98%
	520	시·도비보조금등	133,791,580	9.51%	131,243,944	9.42%	2,547,636	1.94%
		521 시·도비 보조금등	133,791,580	9.51%	131,243,944	9.42%	2,547,636	1.94%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9,548,916	8.49%	111,283,605	7.99%	8,265,311	7.43%
	710	보전수입등	110,898,416	7.88%	102,383,765	7.35%	8,514,651	8.32%
		711 잉여금	109,675,473	7.79%	101,160,822	7.26%	8,514,651	8.42%
		715 보조금등반환금	1,222,943	0.09%	1,222,943	0.09%	0	0.00%
	720	내부거래	8,650,500	0.61%	8,899,840	0.64%	△249,340	△2.80%
		721 전입금	8,650,500	0.61%	8,899,840	0.64%	△249,340	△2.80%

4.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07,545,916	100.00 %	1,393,051,936	100.00 %	14,493,980	1.04 %
010 일반공공행정	76,799,870	5.46 %	77,503,088	5.56 %	△703,218	△0.91 %
011 입법및선거관리	2,103,754	0.15 %	2,103,754	0.15 %	0	0.00 %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344,385	0.02 %	304,385	0.02 %	40,000	13.14 %
016 일반행정	74,351,731	5.28 %	75,094,949	5.39 %	△743,218	△0.99 %
020 공공질서및안전	10,664,254	0.76 %	9,823,485	0.71 %	840,769	8.56 %
025 재난방재·민방위	10,664,254	0.76 %	9,823,485	0.71 %	840,769	8.56 %
050 교육	24,373,707	1.73 %	24,494,931	1.76 %	△121,224	△0.49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8,318,682	0.59 %	8,318,682	0.60 %	0	0.00 %
053 평생·직업교육	16,055,025	1.14 %	16,176,249	1.16 %	△121,224	△0.75 %
060 문화및관광	88,481,227	6.29 %	87,902,207	6.31 %	579,020	0.66 %
061 문화예술	26,693,962	1.90 %	26,426,790	1.90 %	267,172	1.01 %
062 관광	25,579,352	1.82 %	25,534,046	1.83 %	45,306	0.18 %
063 체육	20,608,742	1.46 %	20,197,500	1.45 %	411,242	2.04 %
064 문화재	15,599,171	1.11 %	15,683,871	1.13 %	△84,700	△0.54 %
065 문화및관광일반	0	0.00 %	60,000	0.00 %	△60,000	순감
070 환경	144,054,741	10.23 %	142,717,743	10.24 %	1,336,998	0.94 %
071 상하수도·수질	85,997,189	6.11 %	90,211,189	6.48 %	△4,214,000	△4.67 %
072 폐기물	28,055,595	1.99 %	28,055,595	2.01 %	0	0.00 %
073 대기	19,568,143	1.39 %	13,962,088	1.00 %	5,606,055	40.15 %
074 자연	3,219,537	0.23 %	3,294,737	0.24 %	△75,200	△2.28 %
076 환경보호일반	7,214,277	0.51 %	7,194,134	0.52 %	20,143	0.28 %
080 사회복지	426,281,740	30.29 %	423,959,327	30.43 %	2,322,413	0.55 %
081 기초생활보장	59,072,117	4.20 %	59,513,891	4.27 %	△441,774	△0.74 %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비교증감		
				기 정 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082	취약계층지원	51,688,334	3.67 %	50,291,296	3.61 %	1,397,038	2.78 %
	084	보육·가족및여성	134,240,917	9.54 %	134,896,979	9.68 %	△656,062	△0.49 %
	085	노인·청소년	169,711,843	12.06 %	167,706,254	12.04 %	2,005,589	1.20 %
	086	노동	7,210,579	0.51 %	7,222,837	0.52 %	△12,258	△0.17 %
	087	보훈	4,275,220	0.30 %	4,245,340	0.30 %	29,880	0.70 %
	089	사회복지일반	82,730	0.01 %	82,730	0.01 %	0	0.00 %
090		보건	28,860,076	2.05 %	28,542,198	2.05 %	317,878	1.11 %
	091	보건의료	28,860,076	2.05 %	28,542,198	2.05 %	317,878	1.11 %
100		농림해양수산	146,800,296	10.43 %	143,258,113	10.28 %	3,542,183	2.47 %
	101	농업·농촌	117,679,342	8.36 %	114,497,248	8.22 %	3,182,094	2.78 %
	102	임업·산촌	24,480,875	1.74 %	24,120,786	1.73 %	360,089	1.49 %
	103	해양수산·어촌	4,640,079	0.33 %	4,640,079	0.33 %	0	0.00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7,018,010	1.92 %	25,919,810	1.86 %	1,098,200	4.24 %
	113	무역및투자유치	9,064,608	0.64 %	9,067,608	0.65 %	△3,000	△0.03 %
	114	산업진흥·고도화	14,375,653	1.02 %	13,274,453	0.95 %	1,101,200	8.30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3,577,749	0.25 %	3,577,749	0.26 %	0	0.00 %
120		교통및물류	84,073,867	5.97 %	82,272,349	5.91 %	1,801,518	2.19 %
	121	도로	36,697,796	2.61 %	33,911,278	2.43 %	2,786,518	8.22 %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47,376,071	3.37 %	48,361,071	3.47 %	△985,000	△2.04 %
140		국토및지역개발	151,410,128	10.76 %	147,996,536	10.62 %	3,413,592	2.31 %
	141	수자원	9,605,538	0.68 %	9,165,538	0.66 %	440,000	4.80 %
	142	지역및도시	141,804,590	10.07 %	138,830,998	9.97 %	2,973,592	2.14 %
160		예비비	26,566,269	1.89 %	26,566,269	1.91 %	0	0.00 %
	161	예비비	26,566,269	1.89 %	26,566,269	1.91 %	0	0.00 %
900		기타	172,161,731	12.23 %	172,095,880	12.35 %	65,851	0.04 %
	901	기타	172,161,731	12.23 %	172,095,880	12.35 %	65,851	0.04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안이유

- 제1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임기가 만료('22. 12. 31.) 되어 제2기를 구성하고자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옴부즈만 위촉 등) 제2항에 따라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I 구성개요

- 인원 : 5명
 -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 1명, 대표 옴부즈만이 지정한 부옴부즈만 1명 포함
- 임기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신분 : 비상근
- 구성 :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 협회나 지역 대학,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 시의회의 동의 ⇒ 시장이 위촉

II 추천대상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과 법률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Ⅲ 위촉 제한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당의 당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기타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Ⅳ 옴부즈만의 임무

-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의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 표명
- 고충민원 조사 후 시장 또 시의회 의장에게 특별보고서 제출
- 주요 공공사업의 계약 및 이행, 인사채용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에 참관 및 내부감사 참여 등
- 고충민원 조사·처리 과정 중 발견된 부패 관련 사안의 조사·처리 요구

- 부패방지 또는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의견제시, 건의·요구
-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정책자문, 평가 및 의견제시
- 옴부즈만이 조사한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에 대한 그 처리결과, 이행실태 및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증진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성과 등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3.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8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8항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주무부서(감사실) 의견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8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8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로
-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시선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을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첨부서류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명단 (붙임1)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계획 (붙임2)

[붙임 1]

제2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 명단

연번	성명	성별	나이	비 고
1	김 ○ ○	남	*세	전)순천YMCA 이사장 / 연임
2	박 ○ ○	여	*세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대표 / 연임
3	문 ○ ○	남	*세	순천대학교 교수
4	임○○○	여	*세	변호사
5	정 ○ ○	남	*세	건축사 협회 회장

[붙임 2]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2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제1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임기가 만료됨('22.12.31.)에 따라 해당 위원을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하여 제2기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II 제1기 옴부즈만 운영현황

운영개요

- 인 원 : 5명
- 임 기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
- 신 분 : 비상근
- 운영방법 : 전원 합의제 의사결정
- 옴부즈만 현황

연번	성명	성별	나이	비 고
1	김○○	여	*세	건축사
2	김○○	남	*세	전)순천YMCA 이사장
3	박○○	여	*세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대표
4	심○○	남	*세	순천대학교 교수
5	한○○	여	*세	변호사

□ 추진 실적

- 2020. 6.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20. 10. : 조례안 순천시의회 원안의결 및 공포·시행
- 2020. 12. : 위촉동의안 시의회 원안의결
- 2021. 1. 19. : 제 1회 위원회 개최(옴부즈만 위촉 : 5명)
 - 임원 선출 : 대표 옴부즈만 김현덕, 부옴부즈만 한소영
- 2021. 3. 8. : 제 2회 위원회 개최
 - 여수 옴부즈만(임채성) 초청 운영 사례 강의 및 질의답변
- 2021. 6. 2. : 제 3회 위원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손용철 사무관 초청, 효율적인 옴부즈만 운영방안 컨설팅
 - 옴부즈만증 제작 배부
- 2021. 9. 14. :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
 - 국 순천의료원 로타리 / 김현덕 대표 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 참여
- 2022. 11. 4. : 제 4회 위원회 개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2022. 12. 6.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벤치마킹(여수시청)
 - 여수시 옴부즈만 2017. 8월 출범 / 2명(상근 독립제) / 예산 65백만원
 - 주요실적 : 시정권고, 의견표명, 상담 등 107건(‘20년 53, ‘21년 28, ‘22년 26)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 67개 기관(상근 27, 비상근 37, 혼합 3)

(단위 : 기관, 2022. 9월 기준)

구 분	총계	독임제				합의제			
		계	상근	비상근	혼합	계	상근	비상근	혼합
계	67	11	9	1	1	56	18	36	2

Ⅲ 제2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계획(안)

① 구성개요

- 임 기 : 2023. 2. ~ 2025. 2. (2년)
- 위촉대상 : 5명(의회 동의를 거쳐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일부 연임)
- 신 분 : 비상근
- 옴부즈만 위촉(안)

연번	성명	성별	나이	비 고
1	김 ○ ○	남	*세	전)순천YMCA 이사장 / 연임
2	박 ○ ○	여	*세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대표 / 연임
3	문 ○ ○	남	*세	순천대학교 교수
4	임○○○	여	*세	변호사
5	정 ○ ○	남	*세	건축사 협회 회장

○ 자격 및 위촉방법 : 시의회 동의 → 시장 위촉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과 법률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위촉 제한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당의 당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기타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운영계획

○ 운영방법 : 비상근(합의제)

○ 개최횟수 : 분기 1회이상(필요시 수시)

※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2회(담당자 컨설팅, 위원 교육) 추진

○ **옴부즈만 임무**

-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
-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의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 고충민원 조사 후 시장 또 시의회 의장에게 특별보고서 제출
- 주요 공공사업의 계약 및 이행, 인사채용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에 참관 및 내부감사 참여 등
- 고충민원 조사처리 과정 중 발견된 부패 관련 사안의 조사·처리 요구
- 부패방지 또는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의견제시, 건의·요구
-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정책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 옴부즈만이 조사한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에 대한 그 처리결과, 이행실태 및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증진
-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성과 등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 **고충민원 처리절차**

① (순천시민) 시장·시의회 의장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이란 ? 순천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포함)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② (시장시의회 의장) ombudsman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ombudsman 지정 조사 의뢰
 ※ ombudsman 자문상담 및 심의의결하는 역할까지 확대 운영
- ③ (ombudsman) 고충민원 처리 및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고충민원 처리는 이송 등, 합의 또는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감사 등 의뢰

IV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에 ombudsman 추천대상자 동의요청·확정 : 2023. 2월중
- ombudsman 위촉 및 서약서 징구 : 2023. 2. ~
-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실무자 컨설팅 : 2023. 2월말
-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ombudsman 교육 : 2023. 3.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ombudsman 운영 : 2023. 3.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ombudsman 운영 성과보고 : 2023. 12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정이유

-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헬러원을 맞아 인파가 몰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과 관련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으며,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2조 다중운집 행사)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자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행사
- (안 4조 안전관리)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
- (안 5조 안전관리계획)
 -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행사
 -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명 이상인 행사
 -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 심의
- (안 6조 안전관리의 지원 요청)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안전관련 기관에 안전관리의 지원 및 필요한 조치 요청
- (안 제8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경찰서에 요청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5. 관련부서(기관) 의견 : 의견 있음(의견청취 : 2022. 11. 28. ~ 12. 18.)

의견제출	주요 내용	검토
순천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1항(안전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1항 3호 단, 학술, 예술, 체육,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등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한 경찰 활동을 요청 	미반영
순천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안전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간 최대 운집인원 500명 → 1천명 이상 - 1일 최대 운집 인원 1천명 → 2천명 이상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장에게 통보 →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 	반영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1. 28. ~ 12. 1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2. 5.(가족보육과-287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1. 14.(기획예산실-1661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1. 28.(순천시 공고 제2022-2636호)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순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순천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명 이상인 행사
3. 단, 학술, 예술, 체육,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행사 등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안전관련 기관에 안전관리의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정이유

-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는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 필요(2022. 8. 16. 공포·시행)

2. 주요내용

-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
 - (대상조례)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등 17개
 - (변경내용)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조회(2022. 9. 13. ~ 9. 19.) 결과 : 부서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9. 30. ~ 10.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9. 15.(가족보육과-2198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9. 13.(기획예산실-125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9. 30.(순천시 공고 제2022-2177호)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를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는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납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납부) ① ----- -----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준용규정) ----- ----- -----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익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②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수익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② ----- ----- -----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② ----- -----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 ----- -----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 ----- -----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준용) -----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준용) -----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용규정)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규정) ②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7조(준용) ----- ----- ----- ----- <u>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의 출납은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준용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 -----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석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분석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준용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 ② -----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급단가) ② 대금의 납부는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한다.	제8조(공급단가) ②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u> · 을 준용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회계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u> 」을 따른다. ③ · ④ (생략)	제21조(회계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사이트 확대에 따라 순천만 야시장 장소 이전 필요
- 야시장 이전장소 변경에 따라, 조례안 내용 중 순천만 야시장 운영 위치 세부지번(풍덕동 691번지)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안 제2조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691번지 일원(동천변 저류지 다목적 광장) 에 둔다” 를 “순천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야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한다” 로 개정
- 안 제6조 : “순천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이 한다” 로 문구 수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2. 15. ~ 2023. 1.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2. 9.(가족보육과-292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2. 5.(기획예산실-1810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2. 15.(순천시 공고 제2022-2767호)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순천만 야시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순천만 야시장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691번지 일원(동천변 저류지 다목적 광장)에 둔다.</p>	<p>제2조(위치) 순천만 야시장은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한다.</p>
<p>제6조(사용허가 등) ① 야시장 사용허가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u>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 공모할 수 있다.</p>	<p>제6조(사용허가 등) ① ----- ----- ----- 시장----- ----- ----- ----- -----.</p>
<p>1. ~ 8. (생략)</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 ⑤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전남영상위원회 이사장 변경에 따른 운영 주체 변경
- 현 운영체계에 맞춰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전남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개정
 - 운영 주체 변경에 따라 지원으로 변경
- 전남영상위원회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제공 및 지원
 - 지역 내 영상물 제작·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 영화·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 기타 영상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호의 부대사업
-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8조의4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31. ~ 11.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21.(가족보육과-251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9. 5.(기획예산실-1215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31.(순천시 공고 제2022-2397호)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전남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지원을 통해 국내외의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문화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제공 및 지원
2. 지역 내 영상물 제작·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3.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4. 영화·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7. 기타 영상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호의 부대사업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및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참고**관련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영상위의 설립)

제15조(영상위의 설립) ① 도지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라 한다)를 둔다.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인 상황임.
- 관광약자의 관광 편의 증진 및 개별·소규모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운영하여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이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제47조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및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필요성】

-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맞춤형 여행코스 수립·추진함으로써 관광약자 여행활동 지원하여 행복한 순천여행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수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전문적·체계적인 이용자의 편리성과 서비스 제공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전반

라. 위탁개요

- 운행대수 : 리프트 장착 차량 1대
- 탑승 가능인원 : 휠체어 1대, 일반 최대 4인
- 이용방법 : ☎ 061-749-2800 또는 온라인(순천시바로예약)
이용 최소 3일전 사전예약
- 이용요금 : (3시간) 12,000원, (5시간) 18,000원 (8시간) 26,000원
※ 순천시 관광택시 운행 요금 기준 20% 적용, 단 기본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씩 증액
- 운영내용 : 관광객 맞춤형 코스 운영

마. 민간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주)남도교통

※ 교통정책과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344,801	111,702	115,053	118,046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검토 : 적정
-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 검토 : 공공성, 타당성 효율성 적정

3. 주무부서 의견

- 기존 순환형(또는 테마형) 시티투어는 휠체어 탑승을 위한 리프트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책과에서 관광약자 자유여행 지원을 위한 리프트 장착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1대 구입하여 관광과로 관리전환함.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으로 운영 합의
-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이동권 확보하고 안전과 편의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4. 붙임서류

-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1부.
-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및 민간위탁 계획

관광약자의 관광 편의 증진 및 개별소규모 관광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 운영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이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I 추진배경 및 방향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인 상황임.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국제행사 개최도시로서 순천을 찾는 관광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대한민국생태수도 일류 순천 이미지 제고
- 지역 내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관광약자 여행활동 지원
 - 관광약자 자유여행 지원
 - 순수 관광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사전예약제로 운영

II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제47조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및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Ⅲ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계획

① 운영개요

- 기 간 : 연중무휴
- 운행노선 : 관광약자 맞춤형 코스
- 차 량 : 리프트장착 차량 1대
※ 탑승 가능인원 : 휠체어 1대, 일반 최대4인
- 운영방법 : 민간사업자 위탁 운영
- 사 업 비 : 103백만원(시비) / 운영지원금 96 기타비용 7

② 세부운영 계획

- 운행구간 : 지역내 주요관광지
- 이용대상 : 관광약자, 관광약자와 함께하는 동행자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자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고령자 :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 사본
- 만 8세 이하 아동 :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 그 외 휠체어 사용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단 ‘휠체어가 항상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서비스의 제공 : “순천여행”
 - 관광약자로 인정되는 개인 및 동행자를 대상으로 운영
 - 관광지 코스는 관광약자와 동행자가 직접 지정한 후 위탁사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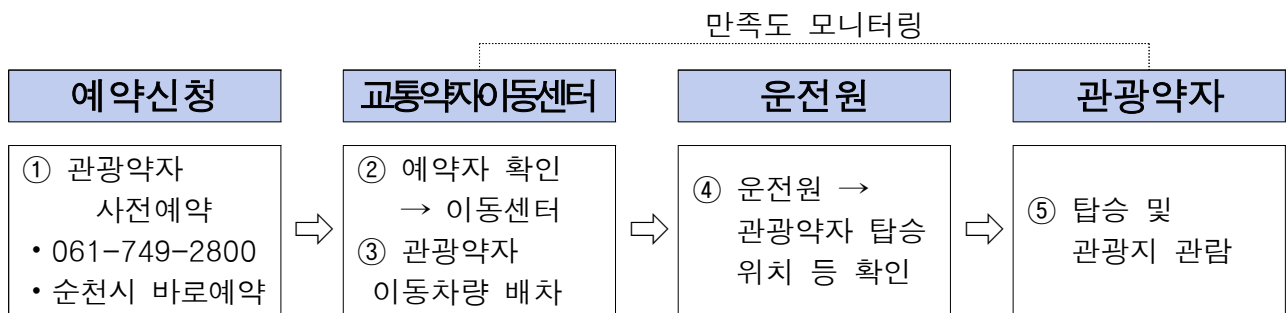
○ 비용부담

- 지원 : 차량, 운전기사
- 부담 : 여행 실비(이용요금, 주차료, 통행료, 입장료, 숙식비 등)

○ 이용횟수 : 년 10회, 1회 1박 2일, 2회까지 연속 사용 가능

○ 이용방법 : 061-749-2800 또는 온라인(순천시 바로예약)

이용 7일전 사전예약



- 관광약자 이동차량 우선 지정 운영 하면서 장애인콜택시 병행 운영
-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순천의 문화역사관광명소·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가이드 병행

○ 이용요금 : (3시간) 12,000원, (5시간) 18,000원 (8시간) 26,000원

※ 순천시 관광택시 운행 요금 기준 20% 적용

단, 기본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 씩 증액

○ 운영내용 : 관광객 맞춤형 코스 운영

③ 운행자 가이드 전문성 강화 및 친절교육

○ 추진시기 : 분기별 1회(연 3회 이상)

○ 추진내용

- 순천시 관광 자원(문화·역사·생태·축제 등)에 대한 이해 및 공유
- 관광택시 운행자와 정보 공유 및 소통의 기회 마련
-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의사소통 교육 기회 마련

※ 관광택시 운행자 교육과 연계 추진

IV 민간위탁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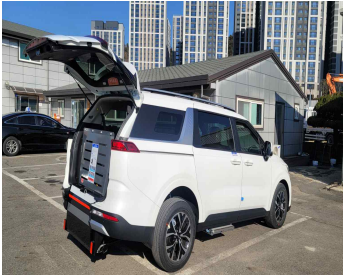
- 운 영 :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센터
 - 위탁업체 : (주)남도교통(대표 : 이용호)
 - 위탁기간 : 2023. 3. 1. ~ 2024. 12. 31.
 - ※ 교통정책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위탁업체와 연계하여 운영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무 :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전반
- 운행방법 : 연중무휴, 08:00~22:00 운행
- 운영인력 : 운전원 2명
- 지원내용
 - 차 량 : 수탁기관에 차량 1대 지원
 - 운영비 :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공공요금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위탁금액 : 예산 범위 내

V 앞으로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1월
- 민간위탁 협약(순천시 ↔ (주)남도교통) : 2023. 2월
- 위탁업체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23. 2월
-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홍보 및 예약시스템 정비 : 2023. 2.~3월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행 개시 : 2023. 3월

※ **차량지원 현황**

○ 차량구입 : 교통정책과(2022년 예산) /자산등록 후 관광과 관리전환

계약명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		
계약일	2022. 9. 28.		
계약금액	45,465,000원		
납품기한	2023. 4. 26.		
납품일자	2023. 1. 11.		

○ 차량등록 현황 : 2023. 1. 17. 등록

자동차번호	70루 1093	차 명	뉴원카니발장애인차 (특별교통수단)
형식 및 모델연도		KA4BBBA-B-8DF-H1N 2023	
길이	5155mm	너 비	1995mm
높 이	1865mm	총 중 량	2520kg
배 기 량	2151cc	승차정원	6명

○ 차량 표지 문구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관광진흥법」 제47의 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및 제47조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및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예산 수반

3. 비용추계의 결과

- 매년 물가상승분 3%반영

(단위 : 원)

구분 \ 연도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비용(a-b)	-344,801,710	-111,702,000	-115,053,060	-118,046,650
세입(a)	0	0	0	0
세출(b)	344,801,710	111,702,000	115,053,060	118,046,650

4. 자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시비	344,801,710	111,702,000	115,053,060	118,046,650

5. 비용추계 상세내역

○ 소요예산 : 111,702천원/연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과목	산출금액	산 출 기 초	비고
인건비	85,610	○기본급 : 48,264 -운전원 2,011,000원×2명×12월 ○제수당 : 25,017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야간근로수당 등 ○퇴직연금 : 5,580 ○사회보험부담금 : 6,749	
피복비	600	○근무복 300,000원×2명	
유류비	13,200	○1,100,000원×1대×12월	
차량유지비	6,806	○소모품, 수리비, 검사수수료 등	
기타운영비	5,486	○위탁수수료 등 제비용	

* 본 추계결과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협의사항

○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 후 관리전환(관광과) : 교통정책과

○ 관광약자 우선 예약

○ 예약자 없을 시 장애인콜택시로 병행 사용

7.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과장 이찬성 (☎ 749-5500)

체험관광팀장 송미옥 (☎ 749-5807)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안이유

- 2023년 5월 31일자로 순천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2023~2025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및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필요성】

- 코로나 이후 단체관광객에서 개별 및 소규모 관광객으로 여행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으며 웨케이션, 웰니스, 탄소중립 등 행복한 순천여행을 위해 다양한 코스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 도모

다. 위탁사무내용 : 2023~2025 순천시티투어 운영 전반

라. 위탁개요

- 운행횟수 : 순환형(일 5회), 테마형(주 6회)
- 운행대수 : 일반버스 2대
- 운영주기 : 화~일 정기코스
- 운영노선(안)
 - 순환형코스(09:10~19:00) : 순천역·버스터미널 및 주요관광지(5개소) 순환
 - 테마형코스(10:10~18:00) : 요일별 3개코스(송광사, 선암사, 맞춤형)
 - 기획코스(계절별, 축제별 연계 투어 등)

마. 민간위탁기간 : 2023. 6. 1. ~ 2025. 5. 31.(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741,816	240,000	247,200	254,616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검토 : 적정
-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 검토 : 공공성, 타당성 효율성 적정

3. 주무부서 의견

-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인프라 제공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 시티투어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및 웰니스 도시로 순천 관광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함.

4. 붙임서류

-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1부.
-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2023~2025 순천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계획

이용객의 다양한 취향과 선택권을 반영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순천시티투어의 사업자를 선정·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제25조〉

I 추진방향

- (투어코스 개편) 이용자 취향선호도, 전년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투어코스에 반영,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환투어 신규코스 발굴
- (안정적 투어운영) 운영기간을 2년('23~'25년)으로 하여 투어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 편의도모 및 시티투어 활성화
- (적정한 운영사업자 선정) 시티투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II 2021-2022년 추진실적

- 운영투어 : 순환형(1대, 화~일 /1일 4회), 테마형(1대, 요일별/1일1회)
- 운영업체 : 해성여행그룹협동조합 대표 김덕규
- 운영실적 및 지원금 지급 내역 (단위:원)

연도	순환형				테마형			
	인원	횟수	수납액	지원금	인원	횟수	수납액	지원금
계	2,039	258	10,274,000	77,831,505	2,152	156	22,468,800	36,111,518
2021	565	67	2,589,000	14,460,610	411	25	4,334,000	7,172,300
2022	1,474	191	7,415,000	63,370,895	1,741	106	18,134,800	28,939,218

○ 운영방법 및 지원금 변경내역 (단위:원)

구 분		공고 (‘21.4.)	협약 (‘21.5.11.)	1차 변경 (‘21.11.23.)	2차 변경 (‘22.8.1.)	3차 변경 (‘23.1.3.)
기준	순환	5명 이상			1명 이상	
	테마	10명이상			5명 이상	
	방법	사전예약			사전예약, 현장	
횟수	순환	주3일 (금,토,일) 1일 4회	주6일(월,운휴) 1일 4회	주6일(월,운휴) 1일 5회	주6일(월,운휴) 1일 4회	
	테마	주3일 (금,토,일) (1일 1회)	주6일(월,운휴) 1일 1회 -코스별 요일별			
지원 금	순환	254,404	215,830		387,515	
	테마	336,404	286,092		264,084	
비 고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객 증가로 평일 운영	·유류대인상반영 ·시티투어 활성화 위해최소탑승인원 완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3월 까지 휴장	

※ 현재 시티투어 운영업체 2023. 5. 31. 위탁기간 만료

Ⅲ 2023-2025년 운영개요

①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3. 6월 ~ 2025. 5월 / 2년
- 운영방법 : 공모에 의해 선정
- ‘23년 사업비 : 240,000천원 / 민간위탁금
- 운영코스 : 순환투어(1개, 화~일), 테마투어(요일별)
 - 순환투어 : 기존 관광명소형, 신규 체험형
 - 테마투어 : 기존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신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
 - 기획투어 : 계절별, 축제별 추가 운영

○ 이용요금

(2023년도 기준, 단위:원)

구분	성인	경로,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고
이용요금	5,000	5,000	3,000	2,000	*식사비, 입장료 이용자부담 *여행자보험 미포함

② 재정지원 방안

- 1일 운영지원금 지급 방식 * 1일 운영지원금 사업자 공모 시 원가 산출
- 이용요금은 업체 수익으로 함.(탑승요금은 협상 후 변경 가능)
- 운영지원금은 사전 예약 시 최소 탑승 인원 미달한 경우 미지급(원칙)
 - 순환투어 : 최소 탑승 인원 5명 이상
 - 테마투어 : 최소 탑승 인원 10명 이상
- 1일 운영비는 인건비, 유류대, 중식비 등 기타 제 경비 일체 포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운행해야 하며 운영 사업자 사정에 의해서 미 운행 시 운영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음

IV 민간위탁 추진계획

① 공모개요

- 공 고 명 : 2023~2025년 순천시티투어 운영사업자 공모
- 제안내용 : 순천시티투어 코스 개발 및 연간 운영 계획
 - 필수요소 : 제시한 투어코스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 * 순환투어(관광명소형, 체험형), 테마투어(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
- '23년 사업비 : 240,000천원
- 운영기간 : 2023. 6. 1. ~ 2025. 5. 31. / 2년
- 신청대상 : 관광사업체(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에 등록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차량소유, 차고지,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예정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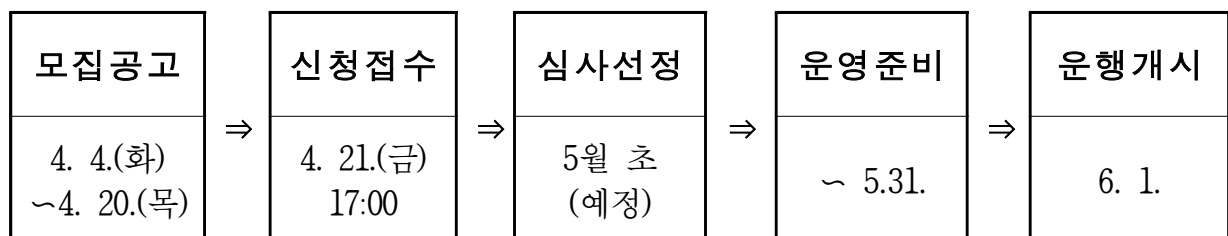
- 선정업체수 : 1개 업체 / 공동수급 가능(2개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사업신청서(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제출
- 공고기간 : 2023. 4. 4.(화) ~ 4. 20.(목) *접수: 4.21.(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②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 선정위원구성
 - 구성시기 : 2023. 4.월중
 - 구성방법 : 관광분야 등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3배수 선정(21명)
 - 구성인원 : 7명(전문가 3, 시민 3, 공무원 1)
 - ※ 별도 계획 수립
- 평가기준 : 정량평가(20%), 정성평가(60%), 가격입찰(20%)
 - 최소 1개 업체 이상 참가 시 평가 실시
- 선정방법
 - 신청업체 :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10분 이내 발표 및 질의 응답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평가표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로 선정

*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적합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결과통보 : 2023. 4월 중 개별 통보

V 추진일정



VII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1. 25.
- 일상감사 요청 : 2023. 3월중
- 시티투어 위탁사업자 공모 공고 : 2023. 4. 4. ~ 4. 20.
- 선정위원 모집 및 구성 : 2023. 4. 10. ~ 4. 20.
- 제안서 접수 : 2023. 4. 21.
- 제안서 평가 : 2023. 4월말
- 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2023. 5월초
- 시티투어 운영 협상 및 협약 체결 : 2023. 5월초.
- 시티투어 운영 준비 및 시범 운영 실시 : 2023. 5월중
- 시티투어 운행 실시 : 2023. 6월초

2023~2025 순천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순천 시티투어 운영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및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시티투어 운영은 여행트렌드 변화에 따른 개별 및 소규모 관광객 까지 확대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 도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원)

구분 \ 연도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비용(a-b)	-741,816,000	-240,000,000	-247,200,000	254,616,000
세입(a)	0	0	0	0
세출(b)	741,816,000	240,000,000	247,200,000	254,616,000

※ 매년 물가상승율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원)

구분 \ 연도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시비	741,816,000	240,000,000	247,200,000	254,616,000

5. 비용추계 상세내역

- 소요예산 : 240,000천원/연
- 산출기초 : 769,230원 × 26일 × 12월 = 240,000,000원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른 하위 조례 정비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체육단체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조문 신설

2. 주요내용

- 체육회 등의 운영비 임의 지원을 의무 지원으로 개정(안 제22조제1항)
 - “보조할 수 있다.” 를 “지원하여야 한다.” 로 개정
-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 사유를 신설(안 제23조제4항)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1. 30. ~ 1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1. 17.(가족보육과-2737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1. 3.(체육진흥과-876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1. 8.(기획예산실-1626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1. 30.(순천시 공고 제2022-2556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체육회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조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법령·조례·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인건비·운영비를 <u>보조</u>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2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 ----- ----- 지원 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 ③ (생략)</p> <p><신설></p>	<p>제23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u>보조금을 교부받은 체육회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조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u></p> <p>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u></p> <p>2. <u>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u></p> <p>3. <u>법령·조례·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u></p> <p>4. <u>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u></p>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22조)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753,173	-333,173	-340,000	-350,000	-360,000	-37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753,173	333,173	340,000	350,000	360,000	37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1,753,173	333,173	340,000	350,000	360,000	370,000
시 비	1,753,173	333,173	340,000	350,000	360,000	37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3년
- 산 출 액 : 연 333,173천원

○ 산출근거

- 순천시체육회 인건비 지원 192,484,000원*1식=192,484,000원

<p>○ 1국장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 2,952,450×12월=35,429,400 - 정액급식비 140,000×12회=1,680,000 - 명절휴가비 1,771,470×2회=3,542,940 - 4대보험 375,000×12월=4,500,000 - 퇴직금 282,310×12월=3,387,690 <p>○ 2국장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 3,174,360×12월=38,092,320 - 정액급식비 140,000×12회=1,680,000 - 명절휴가비 1,904,620×2회=3,809,240 - 4대보험 395,000×12개월=4,740,000 - 퇴직금 302,650×12월=3,631,800 	<p>○ 팀장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 2,867,430×12월=34,409,160 - 정액급식비 140,000×12회=1,680,000 - 명절휴가비 1,720,460×2회=3,440,920 - 4대보험 365,000×12월=4,380,000 - 퇴직금 274,510×12월=3,294,170 	<p>○ 대리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 2,399,920×6월=14,399,520 - 기본급여 2,489,540×6월=14,937,240 - 정액급식비 140,000×12회=1,680,000 - 명절휴가비 1,439,950×1회=1,439,950 - 명절휴가비 1,493,720×1회=1,493,720 - 4대보험 270,000×12개월=3,240,000 - 퇴직금 239,870×12개월=2,878,440 <p>○ 체육청년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여 2,406,000×12월=28,872,000 - 4대보험 264,000×12월=3,168,000 - 퇴 직 금 200,500×12월=2,406,000
--	---	---

- 순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 39,188,000원*1식=39,188,000원

<p>○차량 임차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9,000원×12개월 = 8,868,000 <p>○ 사무실임차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0,000원×1식 = 2,500,000 <p>○복사기 및 유지보수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00×12개월=6,000,000 <p>○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00×12개월=4,200,000 <p>○ 전기요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0×12개월=3,600,000 	<p>○ 종량제봉투 등 사무실 비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0,000×12개월=2,640,000 <p>○ 프랭카드 및 인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58매=5,800,000 <p>○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0×12개월=3,600,000 <p>○ 홈페이지 유지보수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000×1식=1,980,000
--	---

참고**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22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명칭 변경)을 반영한 내용 정비(제9조, 제10조, 제14조)
 -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현 운영체계를 반영한 내용 및 용어 정비(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제13조)
 - 에 관하여 → 은, 함에 있어 → 할 때, 에 대하여 → 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28. ~ 11. 1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27.(가족보육과-254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21.(기획예산실-1486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26.(순천시 공고 제2022-2400호)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등에 관하여” 를 “등은”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 를 “수행할 때”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을 “(지원계획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년마다 수립·시행” 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조 제3항” 을 “법 제3조제4항” 으로,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를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을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협의회 설치)” 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순천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 (이하 “협의회” 를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 를 각각 “위원회” 로 하고, 같은 항 중 “지역사회복지협

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부시장·시민복지국장·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국장·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사회복지업무 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3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u>등에</u>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 ----- <u>등은</u> ----- ----- ----- -----.</p>
<p>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행할 때 ----- ----- -----</p>
<p>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u>3년마다</u>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 ----- <u>수립하여야 하며,</u> <u>그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u>----- -----.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u>법 제3조 제3항에</u>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u>사회복지사업법</u>」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p>	<p>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 <u>법 제3조제4항</u>----- ----- ----- <u>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u> ----- <u>제6조에 따른</u> <u>지원계획</u>----- -----. 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u>순천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u>“(이하 “<u>협의회</u>”라 한다)를 둔다.</p> <p>② <u>협의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p> <p>1. ~ 3. (생략)</p> <p>③ <u>협의회</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u>지역사회복지협의체</u>에서 수행할 수 있다.</p> <p>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u>협의회</u>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협의회의 위원장은</u>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u>협의회의 위원은</u>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u>부시장·시민복지국장·사회복지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 ~ 6. (생략)</p> <p>④ (생략)</p> <p>⑤ <u>협의회</u>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사회복지업무 팀장</u>으로 한다.</p> <p>⑥ <u>협의회의 회의</u>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그 밖의 <u>협의회의 운영</u>에 필요한 사항은 <u>협의회의 의결</u>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p>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 ----- <u>순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u>(이하 “<u>위원회</u>”-----.</p> <p>② <u>위원회</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회</u>----- ----- <u>지역사회보장협의체</u>-----.</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u>-----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u>-----.</p> <p>③ <u>위원회</u>----- ----- <u>업무담당국장·업무담당과장</u>-----.</p> <p>1. ~ 6.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u>----- <u>업무담당팀장</u>-----.</p> <p>⑥ <u>위원회</u>-----.</p> <p>⑦ ----- <u>위원회의 운영</u>-----.</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 연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 상할 수 있다.</p>	<p>제13조(포상) ----- ----- ----- <u>등은</u> ----- -----.</p>
<p>제14조(수당과 여비) <u>협의회</u>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수당과 여비) <u>위원회</u>----- ----- ----- -----.</p>

참고**관련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제4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의2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7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에 따른 출산축하선물·순천사랑상품권·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일몰
- (안 제2조) 문화복지 혜택을 위한 다자녀가정 확인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에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출자 파악 및 확인 방법 간편화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1. 15. ~ 12.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1. 9.(가족보육과-2668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1. 4.(보건사업과-20891)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1. 9.(기획예산실-1633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1. 15.(순천시 공고 제2022-2524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직업 등” 을 “직업상”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대증을 소지한”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300만원” 을 “500만원” 으로, “40만원씩” 을 “80만원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 을 “1,000만원” 으로, “80만원씩” 을 “180만원씩”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00만원” 을 “1,500만원” 으로, “120만원씩” 을 “280만원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1,000만원” 을 “이상 : 2,000만원” 으로, “180만원씩” 을 “380만원씩”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9호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 를 “제20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을 “출산장려금”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의 지원대상자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라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②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③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④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마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⑤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사용료 감면 면제 제7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⑥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⑦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3항제1호 “다자녀가정 세대증명서” 를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을” 로 한다.

⑧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⑨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⑩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⑪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6호 중 “다자녀가정” 을 “다자녀가정으로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사람” 으로 한다.

⑫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⑬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⑮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⑩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⑪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⑫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⑬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⑭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⑮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별표 3 제2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 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삭제</p> <p>5. <u>“다자녀가정 세대증(이하 “세대증”이라 한다)”</u>이란 2자녀 이상 가구를 <u>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p> <p>1. 출생아의 부모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직업상</u> ----- -----</p>
<p>2. ~ 4. (생략)</p> <p><신설></p> <p>③ 제7조제3항의 문화·복지 혜택의 지원대상은 <u>세대증을 소지한</u> 가구로 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 --- <u>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u> -----</p>

현 행	개 정 안
<p>④ 제7조제4항에 따른 다자녀 출산축하선물의 지급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제6조의3 출생 순위에 따른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모로 한다.</p> <p>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첫째 자녀 : 3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40만원씩 5년간 지급) 2. 둘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7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2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5. 다섯째 자녀 이상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p>② (생 략)</p> <p>③ 시장은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문화·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호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는 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9. (생 략) 	<p><삭 제></p> <p>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00만원----- ----- 80만원씩 ----- 2. ----- 1,000만원----- ----- 180만원씩 ----- 3. ----- 1,500만원----- ----- 280만원씩 ----- 4. ----- 이상 : 2,000만원----- ----- 380만원씩 ----- <p><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제20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9.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11. (생 략)</p> <p>13. ~ 18. (생 략)</p> <p>19. 세대당 매월 100리터 이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p> <p>가. 둘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월 100리터</p> <p>나. 셋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월 100리터</p> <p>다. 넷째 자녀 이상이 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월 100리터</p> <p>20. ~ 30. (생 략)</p> <p>④ 시장은 다자녀 출산축하선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 신설 2020.12.31></p> <p>1. 둘째 자녀 : 20만원 상당</p> <p>2. 셋째 자녀 : 30만원 상당</p> <p>3. 넷째 자녀 이상 : 50만원 상당</p> <p>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생 략)</p> <p>② 2자녀 이상 세대일 경우에는 세대증 발급을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사진 1매를 추가 제출하되,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보호자 사진을 제출한다.</p> <p>제10조의2(세대증 발급)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자녀가정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세대증을 발급한다.</p>	<p>10. (현행 제11호와 같음)</p> <p>11. ~ 16. (현행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p> <p><삭 제></p> <p>17. ~ 27. (현행 제20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p> <p><삭 제></p> <p>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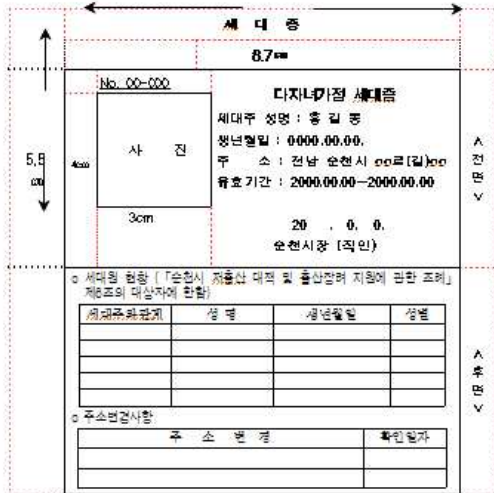
개 정 안

제11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다자녀가정 세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예시)



※ 비 고

1. 기재사항
 - o No. : 세대증 발행번호(예: 순천시 20-01)
 - o 사 진 : 3cm × 4cm
 - o 성 명 : ○ ○ ○
 - o 생년월일, 주소
 - o 유효기간 :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3년 간
2. 재질은 플라스틱 카드

제11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 ① ---
----- 출산장려금-----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기존 출산장려금지원〉

- 관련조례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시작 : 2021. 1. 1. ~
- 지원대상 : 2021. 1. 1.이후 출생아(출생일 기준, 부모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가정)
- 지급방법 : 출생시 1회 + 매년 생일달 5회 (총6회) /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지원금액 :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금액 차등지원

구분	총 지원액	출생 신고시	매년 생일달
첫째아 출산 시	300만원	100만원 일시금	40만원씩 5회
둘째아 출산 시	500만원	100만원 일시금	80만원씩 5회
셋째아 출산 시	700만원	100만원 일시금	120만원씩 5회
넷째아 출산 시	1,000만원	100만원 일시금	18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출산 시	1,500만원	100만원 일시금	280만원씩 5회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예산액	지급인원	지급액	비고
2021년	1,850,000	1,386	1,386,000	
2022년	2,848,800	2,635	1,946,100	'22.10.24 기준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7조

-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2. 둘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380만원씩 5년간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을 1인당 최대 500~2,000만원 출생순위 별 차등 지급
(*출생신고 시 100만 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출생순위 별 5회 분할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38,182	-3,497	-5,664	-7,831	-9,998	-11,192
세입(a)						
세출(b)	-38,182	-3,497	5,664	-7,831	-9,998	-11,19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38,182	-3,497	-5,664	-7,831	-9,998	-11,192
국 비						
도 비						
시 비	-38,182	-3,497	-5,664	-7,831	-9,998	-11,192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기 간 : 2023. 1. 1. 이후
- 대 상 : 2023. 1. 1. 이후 출생아, 만 0세~만 5세
- 지급액 : 1인당 최대 500~2,000만원지급 ※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이후
시비	3,497	5,664	7,831	9,998	11,192	12,385

○ 산출내역

- 2023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3,497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1~'22 출생아	· 400천원×1,576명(첫째아)×1회 · 800천원×1,222명(둘째아)×1회 · 1,200천원×240명(셋째아)×1회 · 1,800천원×16명(넷째아)×1회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	1,947	
	'23 출생아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4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5,664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1~22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천원×1,576명(첫째아)×1회 · 800천원×1,222명(둘째아)×1회 · 1,200천원×240명(셋째아)×1회 · 1,800천원×16명(넷째아)×1회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 	1,947	
	'23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5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7,83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1~22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천원×1,576명(첫째아)×1회 · 800천원×1,222명(둘째아)×1회 · 1,200천원×240명(셋째아)×1회 · 1,800천원×16명(넷째아)×1회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 	1,947	
	'23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5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9,998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1~22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천원×1,576명(첫째아)×1회 · 800천원×1,222명(둘째아)×1회 · 1,200천원×240명(셋째아)×1회 · 1,800천원×16명(넷째아)×1회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 	1,947	
	'23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5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6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7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11,191.5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2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천원×788명(첫째아)×1회 · 800천원×611명(둘째아)×1회 · 1,200천원×120명(셋째아)×1회 · 1,800천원×8명(넷째아)×1회 · 2,800천원×4명(다섯째아 이상)×1회 	973.5	
	'23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5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6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7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8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12,385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3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5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6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7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8 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순천시 출생아수 : 18년(1,722명), 19년(1,792명), 20년(1,608명), 21년(1,553명)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보육아동과 과장 김은미(☎ 749-6187)
 인구출산정책팀장 박소영(☎ 749-6896)

참고**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되어 인용 법령 개정
- 법의 내용 및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 내용 변경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인턴 취업지원 분야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 → “기업 등”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1. 10. ~ 11. 3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1. 9.(가족보육과-2671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1. 9.(기획예산실-1629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1. 10.(순천시 공고 제2022-2505호)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순천시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경제활동 촉진사업)” 을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 제2항” 을 “법 제13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을 “기업 등을”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 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촉진사업” 을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에 따라 순천시 <u>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u>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경력단절여성 등</u>”이란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p>2. (생 략) <u><신 설></u></p> <p>3. (생 략)</p> <p>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u>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u>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p>	<p><u>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u>」-----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p> <p>제2조(정의) ----- -----.</p> <p>1.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경력단절 예방</u>”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3조(책무) ① ----- -----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 -----.</p>

현 행	개 정 안
<p><u>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u>에 노력해야 한다.</p>	<p><u>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u>에 노력하여야 하고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순천시</u>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은 <u>법 제4조</u>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순천시 <u>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u>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u>법 제5조</u>-----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u>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u>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5조(실태조사) ①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① 시장은 <u>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u>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① ----- <u>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u> ----- -----.</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0조 제2항</u>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p>	<p>3. <u>법 제13조제2항</u>----- -----</p>
<p>4. <u>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u>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p>	<p>4. ----- ---- <u>기업 등을</u> ----- -----</p>

현 행	개 정 안
<p>5. ~ 7. (생 략)</p> <p>8. 그 밖에 <u>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u></p> <p>② (생 략)</p> <p>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u>촉진사업</u>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5. ~ 7. (현행과 같음)</p> <p>8.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무의 위탁) ① ----- ----- <u>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참고**관련 법령****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 여성경제활동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

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등)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3. 취업·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6.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7.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 환경 조사
 8.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정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보고·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제1조 : 제정목적(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규정)
- 제6조 : 지원사항(심리상담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구제 및 치유 지원)
- 제7조 :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신청자 불이익 금지)
- 제9조 : 안전시설 확충(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2. 15. ~ 2023. 1.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2. 9.(가족보육과-2920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2. 25.(허가민원과-4649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1. 29.(기획예산실-1762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2. 9.(순천시 공고 제2022-2784호)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및 휴식공간 설치
 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

제10조(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간 및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제6조 관련)

지원 구분	근 거	지원 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6조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비용 지원	
의료비	제6조제1항 제2호	연간 20만원 이내	1. 병원 진료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6조제1항 제3호	1일 2시간 이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가능(최대 4시간)
법률상담 등	제6조제1항 제4호	법률 상담 연계 등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6조제1항 제5호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그 밖의 사업	제6조제1항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피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작성 ○ 피해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소송지원() 휴식시간()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_____ , 계좌번호 _____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지원 사항)** :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9조(안전시설 확충)** :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비, 의료비 등 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소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세입(a)	-	-	-	-	-	-
세출(b)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시 비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개년)
- 사업비 : 40,000천원
- 산출근거(2023년)
 - 심리상담센터 운영 : 250,000원×2명×6월=3,000천원
 - 민원문화 조성 홍보물 : 100원×4,000매=400천원
 - 민간인의 폭행으로 인한 의료비 : 200,000원×5명=1,000천원
 - 휴대용 보호장비 리스 : 20,000원×15개×12월 = 3,6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허가민원과 과 장 장순모(☎ 749-5505)
민원봉사팀장 이형금(☎ 749-5813)

참고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안이유

- 박람회 조직위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운영 지원계획 상담인력 증원 및 통합운영 요청에 의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온누리콜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
→ 상담사 6명 증원과 박람회 기간 중 주말 근무자 인건비 반영 위탁금 증액
- 위탁운영비 정산을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회계감사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 ~ 2023. 12.(30개월)
- 장 소 : 한화생명빌딩 2층 335.75㎡(운영), 행정전산실(시스템)
- 소요예산 : 3,135백만원 (21년 668, 22년 1,417, 23년 1,050백만원)
 - 위탁운영비 1,496 / 시스템 1,064/ 리모델링 21 / 임차료 등 554백만원
- 주요내용 :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전반
- 추진방법 :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3년)
 - 운영업체 : (주) **kt cs**
 - 상담인력 : 12명(상담사10, 센터장1, 리더강사1)

나. 변경개요

○ 위·수탁 협약변경 사항

당 초	변 경
(제2조)(콜센터 명칭) <u>순천시 민원콜센터</u>	(제2조)(콜센터 명칭) <u>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u>
(제10조제1항)(위탁운영비의 지급) 콜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위탁업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위·수탁기간동안 <u>총 십이억사천일백사십팔만육천오백일십원 (₩1,241,486,510원)</u>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위탁운영비의 지급) 콜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위탁업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위·수탁기간동안 <u>총 십사억구천육백삼십일만칠천팔백이십원 (₩1,496,317,820원)</u>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위탁운영비를 다음달 <u>10일</u> 까지 위탁자에게 청구	(제10조제2항) 위탁운영비를 다음달 <u>23일</u> 까지 위탁자에게 청구
(제10조제6항)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u>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u>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u>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u>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비 : 금1,496,317,820원(금일십사억구천육백삼십일만칠천팔백이십원)

구 분	총괄(30개월)	1차분 ('21.7.1.~12.31.6개월)	2차분 ('22년, 12개월)	3차분 ('23년, 12개월)
사업비	1,496,317,820	230,755,670	537,352,000	728,210,150

○ 변경사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합안내를 온누리콜센터와 통합 운영으로
상담사 증원과 주말근무자 인건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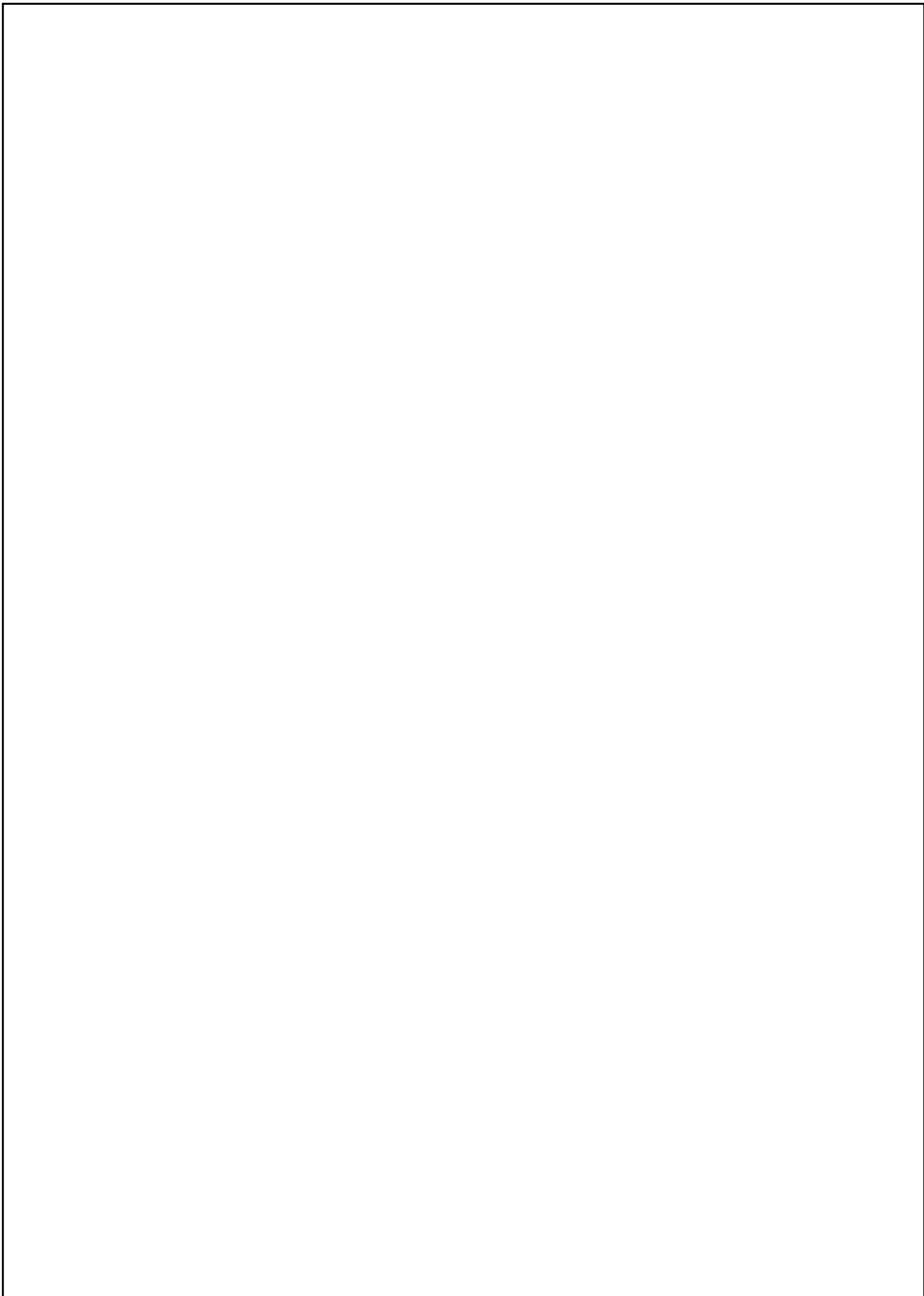
- 위탁운영비 정산과 관련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 회계감사 실시

3. 그동안 추진 사항 및 계획

- 콜센터 구축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 2019. 8. ~ 11.
- 콜센터 관련 조례제정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 : 2020. 6. ~ 10.
-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용역 협약체결 : 2021. 5.
- 위탁 용역 변경에 따른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2
- 민간위탁 운영 변경 협약체결 및 공증, 변경 계약 : 2023. 2

4. 관련법령 :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5. 붙임서류 :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변경계획(안) 1부.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용역 변경계획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박람회 전담 콜센터 상담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관람객 만족도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콜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박람회 운영 지원계획 상담인력 증원 및 통합운영 요청[정원운영부265(2022. 2. 10.)]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온누리콜센터 상담인력 증원 통합 운영계획, 허가민원과-12112(2022. 3. 29.)

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7. ~ 2023. 12.(30개월)
- 장 소 : 한화생명빌딩 2층 335.75㎡(운영), 행정전산실(시스템)
- 소요예산 : 3,135백만원 (21년 668, 22년 1,417, 23년 1,050백만원)
 - 위탁운영비 1,496 / 시스템 1,064/ 리모델링 21 / 임차료 등 554백만원
- 주요내용 :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전반
- 추진방법 :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3년)
 - 운영업체 : (주) **kt cs**
 - 상담인력 : 12명(상담사10, 센터장1, 리더강사1)

Ⅲ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 위·수탁 협약 변경 내용

당 초	변 경
(제2조)(콜센터 명칭) <u>순천시 민원콜센터</u>	(제2조)(콜센터 명칭) <u>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u>
(제10조제1항)(위탁운영비의 지급) 콜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위탁업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위·수탁기간동안 <u>총 십이억사천일백사십팔만육천오백일십원 (₩1,241,486,510원)</u>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위탁운영비의 지급) 콜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위탁업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위·수탁기간동안 <u>총 십사억구천육백삼십일만칠천팔백이십원 (₩1,496,317,820원)</u>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위탁운영비를 다음달 <u>10일</u> 까지 위탁자에게 청구	(제10조제2항) 위탁운영비를 다음달 <u>23일</u> 까지 위탁자에게 청구
(제10조제6항)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u>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u>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u>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u>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비 : 금1,496,317,820원(금일십사억구천육백삼십일만칠천팔백이십원)

구 분	총괄(30개월)	1차분 ('21.7.1.~12.31.6개월)	2차분 ('22년, 12개월)	3차분 ('23년, 12개월)
사업비	1,496,317,820	230,755,670	537,352,000	728,210,150

○ 변경사유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합안내를 온누리콜센터와 통합 운영으로

상담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주말근무자 인건비 반영
- 위탁운영비 정산과 관련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 회계감사 실시

Ⅲ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심의 : 2023. 2월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변경 및 계약 체결 : 2023. 2월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 수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1,496,318	-230,756	-537,352	-728,210
세입(a)	-			
세출(b)	-1,496,318	-230,756	-537,352	-728,21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496,318	230,756	537,352	728,210		
시 비	1,496,318	230,756	537,352	728,21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1. 7 ~ 2023년(3개년)

○ 사 업 비 : 1,496,318천원

○ 산출근거 : 순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 1,496,318천원

- 인건비(상담사 12명) : 1,241,487천원

- 인건비(증원 6명, 주말근무자) : 177,231천원

- 집기 및 비품 : 77,6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허가민원과 과장 장순모(☎ 749-5505)

민원봉사팀장 이형금(☎ 749-581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2조제5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3항제2호나목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공동주택 인동간격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32조제3항 : 「건축법」 제80조제2항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위임사항에 따른 가중부과 비율 100분의 50 규정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2. 15. ~ 2023. 1.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1. 28.(가족보육과-2808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2023. 1. 19.(기획예산실-876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2. 6.(기획예산실-1811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2. 15.(순천시 공고 제2022-2621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② (생략)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생략)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생략)

④ ~ ⑦ (생략)

□ 건축법 제80조제2항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

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정이유

- 순천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 (지원회수) 대상포진 백신접종 1회
- (비용지원)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50%
- (실시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 (지원절차) 신분증 지참, 예진표 작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피해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기준 적용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지역보건법 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1. 15. ~ 12.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31.(가족보육과-2572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0. 20.(건강증진과-199985)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27.(기획예산실-1522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1. 3.(순천시 공고 제2022-2459호)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제4조(비용 지원)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순천시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비용 지원)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다.

1. 국민의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65세이상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1,060,000	480,000	140,000	150,000	150,000	140,000
세출(b)	1,060,000	480,000	140,000	150,000	150,000	14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1,060,000	480,000	140,000	150,000	150,000	140,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060,000	480,000	140,000	150,000	150,000	14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산출액(2023년) : 480,000천원

○ 산출근거(2023년)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약품구입비 : 12,000명 × 80,000원 = 960,000천원

- 대상 : 12,000명 ☞ 47,380명(65세이상 어르신)의 25%

☞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세입) : 12,000명 × 40,000원 = 480,000천원

※ 2019년부터 전라남도 시책으로 65세이상 기초수급자는 무료접종 시행 중

○ 사업비 : 480,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김정숙(☎ 749-6874)

보건민원팀장 김경자(☎ 749-6903)

참고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
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
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자 : 순 천 시 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2023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및 도심권(역, 터미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 기여

2. 주요내용

- 2023정원박람회 셔틀버스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
: 박람회 관광객 등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1. 19.) 결과
 -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운영부 의견 있음 : 수용
 - (제출의견) 제12조제3항의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함.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2. 8.(가족보육과-291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1. 25.(국가정원운영과-8449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2. 19.(기획예산실-188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2. 30.(순천시 공고 제2022-2982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셔틀버스 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 운영 기간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이며, 각 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셔틀버스 운영 방법은 조직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12조(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주차장 및 도심권(역,터미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 기여
- 장기간(7개월) 열리는 박람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 근거 규정 마련 필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총 비용(a-b)	-1,260,000	-1,260,000	-	-	-	-
세입(a)						
세출(b)	1,260,000	1,26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합 계	1,260,000	1,260,000	-	-	-	-
시 비	1,260,000	1,26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사업기간 : 2023. 4. ~ 10.(7개월)
- 산 출 액 : 1,260백만원(시비)

○ 산출근거

- (평 일) 145일 × 700,000원 × 6대 = 609,000천원 ※ 45인 기준
- (주 말) 69일 × 700,000원 × 10대 = 483,000천원
- (기 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 168,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과장 정학규 (☎ 2772)
- 박람회지원팀장 차영현 (☎ 2962)